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3594 |
|----------|-------|

발의연월일 : 2018. 5. 16.

발의자 : 백혜련 · 강병원 · 강훈식

김현권 · 윤후덕 · 노웅래

신창현 · 정춘숙 · 박경미

김상희 · 이춘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항·제2항).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2년”을 “5년”으로,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7년”으로,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 |
| 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 ----- ----- ----- ----- |
| 은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00</u> <u>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u>5년</u> ----- <u>3천</u> |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 행한 때에는 <u>3년</u> 이하의 징역 | <u>만원</u> ----- ② ----- |
| 또는 <u>1천500만원</u>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 <u>7년</u> ----- ----- <u>5천만원</u> ----- -----. |